

경운대학교 대외협력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와 국내·외 대학 및 기관과의 학술, 교육, 문화 교류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외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,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간사는 대외협력업무 담당자가 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과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대외협력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국내·외 대학, 연구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
- 2. 국내·외 자매대학, 연구기관과의 교수 교환 근무 및 공동연구
- 3. 국내·외 대학과의 교직원·학생 교류 및 기자재 공동이용
- 4. 국내 초·중등 교육기관과의 자매 학교 협약 및 연계 강화
- 5. 국내·외 산업체 기관 및 연구소와의 협정 체결
- 6. 기타 대외협력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위원회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